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에 의거 매년 고시됨에 따라 개정
 - “대학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를 “대학생”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전화 : 3396-5355, FAX : 3396-8730, E-mail : jdk539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학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를 “대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대학생 교통비 (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 상자는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 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u>대학생으로 소득인정</u> <u>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u> <u>52 이하인</u> 자로 한다. 다만, 다 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 2. (생 략)</p>	<p>제3조(지원대상) ----- ----- ----- ----- ----- ----- <u>대학생</u>----- ----- -----. -----.</p> <p>1. • 2. (현행과 같음)</p>